

ISSUE BRIEF | **코로나19와 한국의 이주민**

한국 NGO의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 사업

모두에게 낯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었다. 특정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반감을 피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바이러스 자체에 집중한 명칭을 사용하길 권고하였으나, 일부 정치인과 언론들은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¹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언론의 이름으로 버젓이 공개되었고,² 이처럼 사회적 감수성이 결여된 언론 보도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차별로 이어졌다. 대중이용시설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이주민의 입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³,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가정에 마스크가 보급될 때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지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도 차별과 배제가 어울리지 않은 학교조차 이주배경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나타났다.⁴

이와 같이 악화되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황 등으로 인해 큰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⁵ 한국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주민들은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 공적 지원이 절실했으나 한국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들은 오히려 코로나19 긴급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하고 분리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민간 분야에서 공적 지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들이 생겨났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총 6억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는 해당 지원 사업의 개요와 지원 결과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차별받는 한국의 이주민들의 어두운 현실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 사업’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었다. 공적 분야의 긴급생계비 지원에서 배제된 이주민들이 지원 대상이었으며, 사업의 목적은 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이주민과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2) 이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와 미등록 이주민 쉼터의 방역을 지원하고 소독제와 마스크를 배포함으로써 개인 위생과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해당 사업은 전국의 이주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당사자 또는 기관에게 긴급생계비를 개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원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주요 선정기준으로 1) 한부모가족, 2) 질병·장애 유무, 3) 5인 이상 가족, 4) 무직·실직 여부가 설정되었고, 대부분의 신청 사례에서 선정기준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당 긴급생계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수령 방법으로는 1) 개인 및 단체로 계좌이체 또는 2) 개인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혹은 신청 담당 이주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총 118개(3회차 지원으로 중복있음) 이주 관련 기관들을 통해 총 1,907건의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1,747가구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보완 사업으로 전국 67개(3회차 지원으로 중복있음) 이주 관련 기관과 1,200명의 이주민에게 방역 물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접수된 총 1,907건의 지원서를 살펴본 결과, 여성 신청자 수가 1,217명으로 월등히 많았고, 남성 신청자는 689명 그리고 기타 1명으로 파악되었다. 신청자들의 출신국은 총 55개국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그 중 베트남(338명), 중국(301명), 몽골(257명), 필리핀(164명) 출신의 신청자들이 전체 신청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태국 순으로 신청자 비중이 높았다.

신청자의 비자 종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주(F) 비자가 총 470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기체류(D) 비자와 취업(E, H) 비자가 각 229가구로 집계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접수된 지원서들 중 기타(G-1) 비자와 미

	국가	신청자 수(명)
1	베트남	338
2	중국	301
3	몽골	257
4	필리핀	164
5	네팔	83
6	우즈베크	74
7	태국	67
8	라이베리아	56
9	이집트	54
10	나이지리아	50
11	예멘	44
12	캄보디아	44
13	스리랑카	40
14	러시아	34
15	방글라데시	27
16	시리아	21
17	파키스탄	21
18	기타	232
	합계	1,907

출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20)

2 신청자 및 선정자 현황

등록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난민신청, 소송진행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기타(G-1) 비자가 총 287가구에 이르고, 전체 신청의 약 30%인 613가구가 미등록 상태로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가족 구성을 검토해본 결과, '2-5인 미만'이 922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인 가구'가 722가구 그리고 '5인 이상'이 193가구으로 집계되었다.

3 신청사례

다음은 긴급생계비 지원이 결정된 사례들 중 일부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내 이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1) 한부모 가정

- 필리핀 출신 이주민 유학생 A씨(30대)는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한부모이다. 본인의 학비와 가정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고 학생이라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 수개월째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 중국 출신 이주민 C씨(30대)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와 생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사도우미로 주 4회 근무했지만 현재는 일이 완전 끊긴 상태이고,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느라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 필리핀 출신 이주민 D씨(30대)는 미등록 상태로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현재 셋째 아이의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출산 비용도 부족하고 월세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2) 질병과 장애

-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민 B씨(20대)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파트타임 업무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현재 실직 상태이다.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급한 병원비도 부족한 상태이다.
- 베트남 출신 이주민 C씨(20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대수술을 받았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친구들도 힘들어지자 더 이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병원도 운영을 중단하여 필요한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 중국 출신 이주민 D씨(50대)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큰 부상을 입었다. 치료 후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부인의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5인 이상 가족

- 시리아 출신 이주민 A씨(30대)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인정받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 중이다. 자녀 중 한 아이의 병원비로 수입의 많은 부분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며, 남편이 파트타임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 가나 출신 이주민 B씨(30대)와 남편은 출국유예 상태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자녀들의 경우, 한 명은 미등록 상태이고 한 명은 출국유예 상태이다. 현재 미등록 상태의 시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불안한 체류상태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몽골 출신인 이주민 C씨(30대)는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 미등록 상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가족들의 마스크를 사는 것도 부담되는 형편이다.

4) 무직 또는 실직

-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 A씨(30대)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주거 비용도 마련할 수 없어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 D씨(30대)는 코로나19로 인해 6년 동안 근무하던 공장에서 해고당했다. 한국에서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국경이 폐쇄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이다.
- 중국 출신 이주민 E씨(50대)는 코로나19 때문에 2월부터 무기한 무급 휴직 상태가 되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자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고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정적인 수입 없이 어렵게 버텨내고 있다.

5) 기타

- 우즈베키스탄 이주민 A씨(20대)는 유학생이며 그의 아내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잠시 입국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외국인 등록증도 없이 한국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며 출산 준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 이집트 출신 이주민 B씨(30대)는 1년 6개월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있다가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이다. 한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고 장기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재정파탄에 이르렀지만 현재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허되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다.
- 몽골 출신 이주민 C씨(30대)는 성폭력 피해자로 성폭행 사건 처리 후 출국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경찰조사와 국경폐쇄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미등록 상태라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약칭: 외국인처우법)이 제정되었다. 외국인 국내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수립·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었다. 이 기본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⁶ 이처럼 입법목적이 매우 추상적인 외국인처우법은 집행적 내용이 많이 배제되어 있고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인 외국인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⁷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처우법은 본래 목적인 사회통합과는 사뭇 거리가 먼 한국의 이주민들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배제하는 기준이 되었다. 일례로 외국인처우법은 그 대상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제한한다. 이에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일체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인도적인 민간 분야의 지원일지라도 지원의 대상이 ‘미등록 외국인’이라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내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인권의 측면에서 재고해봐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수많은 사례들은 현재 한국의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매일같이 견뎌내고 있는 일상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이미 열악했던 그들의 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들에게는 공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이주민 가족들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의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⁸ 외국인처우법을 비롯한 한국의 철저한 국적자 및 혈통 중심 정책과 배타적인 사회적 인식이 한국의 이주민들을 계속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이방인’으로 남아있게 한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에게 한국 사회가 어떠한 시선과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특히 ‘이주민’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이주민들의 삶은 참혹하다. 등록과 미등록, 비자 종류, 출신국 등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그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이 아닌 이방인이 되게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차별을 받게 한다. 지금까지 쪽 그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된 지금, 이를 눈감아 버릴 것인지 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 1 JTBC. 보도자료(2020.2.04) "[팩트체크]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못 쓰게 했다?"
- 2 헤럴드경제. 보도자료(2020.1.29)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
- 3 인천투데이. 보도자료(2020.6.26) "'외국인 입장 불가' 연구소 소재 불링장, 인권침해 논란"
- 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접수사례(2020.3)
- 5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2020.11)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법률 제14974호, 시행 2017. 10. 3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7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2016.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8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2020.5.13) "순수 외국인 구성 가족 정부지원재난금 받게 해주세요"

